

##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

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2년 3월 25일 (금) 오전 10시
2. 장 소 :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5(정왕동) KGETS(주) 본사 3층 대회의실
3. 회의목적사항  
《보고 안건》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, 감사보고, 영업보고  
《부의 안건》  
제1호 의안 : 제23기(2021년1월1일~2021년12월31일) 재무제표(별도 및 연결)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  
\* 1주당 현금배당 120원 (액면가액의 24%)  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
제3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(사내이사 3명)  
3-1호 : 사내이사 엄기민 선임의 건  
3-2호 : 사내이사 광재선 선임의 건  
3-3호 : 사내이사 광정현 선임의 건  
제4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  
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
제6호 의안 :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
제7호 의안 : 분할 승인의 건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 제2호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5. 경영참고사항  
상법 제542조의 4, 동법 시행령 제6조의 4에 의거, 경영참고 사항 등을 당사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,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 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 
우리회사는 상법 제 368조의 4 제 1항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에 대한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(2022년 3월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.)
7. 기타사항  
-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  
- 주주총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031-488-1124 경영지원부 조성환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.

2022년 3월 10일

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

대표이사 엄 기 민 (직인생략)

[별첨: 안전참고자료]

(제1호 의안) 제23기(2021년1월1일 ~ 2021년12월31일) 재무제표(별도 및 연결) 및 이익  
 잉여금처분 승인의 건. ※1주당 현금배당 120원 (액면가액의 24%)

제23기 재무제표의 세부사항은 주총 1주전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 예정인 사  
 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참조.

(제2호 의안) 정관 일부 변경의 건.

현행	개정	개정이유
제2조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1. 기초 화합물 제조 및 판매업 2.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3. 폐수, 하수 및 분뇨 수거 처리업 4. 금속 및 비금속 재생 재료 수거 처리업 5. 의약품,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 제제 제조 및 판매업 6. 무역업 7. 공업용 염 제조업 8. 부동산 임대업 9.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10. 석면해체 제거업 11.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12. 바이오디젤 및 식용성유지 제조업 13. 바이오디젤 및 식용성유지 보관 유통 및 판매업 14. 바이오디젤 및 식용성유지 수출입업 15. 바이오디젤 및 식용성유지 생산공정설계, 엔지니어링업 16. 바이오디젤 및 식용성유지 생산설비제작 및 설치업 17.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 및 유통판매업 18. 바이오디젤 원료 재배 및 판매업 19.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, 관 및 판매업 20. 탈황석고 판매업 21. 정제연료유 생산 및 판매업 22. 윤활기유, 윤활유, 연료류, 석유류, 화학류, 정제부산물 가공처리 및 재활용업 23. 위 22항에 대한 제조, 판매	제2조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1. 부동산 임대업 2. 바이오디젤 및 식용성유지 제조업 3. 바이오디젤 및 식용성유지 보관 유통 및 판매업 4. 바이오디젤 및 식용성유지 수, 출입업 5. 바이오디젤 및 식용성유지 생산공정설계, 엔지니어링업 6. 바이오디젤 및 식용성유지 생산설비제작 및 설치업 7.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 및 유통 판매업 8. 바이오디젤 원료 재배 및 판매업 9.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, 관 및 판매업 10. 정제연료유 생산 및 판매업 11. 윤활기유, 윤활유, 연료류, 석유류, 화학류, 정제부산물 가공처리 및 재활용업 12. 위 22항에 대한 제조, 판매 및 수출입업 13. 유독물 판매 및 알선업 14. 대체연료 제조생산업 및 판매업 15. 폐기물 재생처리업 16. 고물 도.소매업 17. 금속광물 도소매업 18. 도시광산업 19.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. 상품 종합 도소매업 21. 통신판매업 22. 태양력 발전업 23. 전기 판매업	- 사업분할에 의한 변경 - 24 ~ 26 바이오사업 목적 추가

<p>및 수출입업</p> <p>24. 유독물 판매 및 알선업</p> <p>25. 대체연료 제조생산업 및 판매업</p> <p>26. 폐기물 재생처리업</p> <p>27. 폐기물 최종(매립)처분업</p> <p>28. 폐수수탁처리 및 재이용업</p> <p>29.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</p> <p>30. 고물 도.소매업</p> <p>31. 유기성폐기물 신재생사업</p> <p>32.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</p> <p>33. 사료 제조 및 판매업</p> <p>34. 유기질 비료 제조 및 판매업</p> <p>35. 금속광물 도소매업</p> <p>36. 도시광산업</p> <p>37.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</p> <p>38. 상품 종합 도소매업</p> <p>39. 통신판매업</p> <p>40. 태양력 발전업</p> <p>41. 전기 판매업</p> <p>42. 위 사업에 관련 또는 부수되는 사업일체</p>	<p>24. 바이오선박유 제조, 판매 수출입업</p> <p>25. 바이오디젤 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</p> <p>26. 바이오디젤 발전업</p> <p>27. 위 사업에 관련 또는 부수되는 사업일체</p>	
<p>제3조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) ①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시흥시에 둔다.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.</p>	<p>제3조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) ①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경상남도 밀양시에 둔다.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.</p>	<p>①항 분할에 의한 본점 소재지 변경</p> <p>②전과 동일</p>
<p>제13조의2(주주명부) 회사의 주주명부는 「상법」 제352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.</p>	<p>제13조의2(주주명부 작성·비치) ①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·비치하여야한다. ②회사는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 ③회사의 주주명부는 「상법」</p>	<p>①항 전자증권법 제37조제6항의 규정내용 반영</p> <p>②항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3호 가목에 의거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.</p> <p>③항 기존 제13조의2의 내용을</p>

	제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.	이관함.
제14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. 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	제14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 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 회사는 이를 2주간전 공고하여야 한다.	- 전자증권법에 따라서 주주명부 폐쇄절차 없이 주주명부 확정 가능함.
제46조(이익배당)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,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 ②이익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.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 ④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제44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.	제46조(이익배당)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,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 ②이익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.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제44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.	①항 현행과 동일  ②항 현행과 동일  ③항 기준일 제도 운영상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.(14조1항 :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)  ④항 현행과 동일
[부칙] 제50조(시행일) ① 이 정관은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의 승인 시부터 시행한다. ② 제42조의3의 제3항,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.	[부칙] 제50조(시행일) ① 제2조, 3조의 개정 규정은 분할기일인 5월1일부터 시행한다.  ② 제13조의2, 제14조의 제1항, 제2항, 제46조의 제3항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25일 정기주주	분할에 따른 시행일 마련  ①항 변경  ②항 변경

③ 제42조의3의 제4항,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서 선임된 가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	총회의 승인 시부터 시행한다.	③항 삭제
--	------------------	-------

**(제3호 의안) 사내이사 선임의 건(사내이사3명)**

**3-1호 사내이사 엄기민 선임의 건**

(1)후보자 인적사항

구 분	후보자 성명	생년월일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사내이사 (재선임)	엄기민	1965.04.15	미해당	없음	이사회

(2) 후보자의 약력 및 당해 회사와의 거래 내역

주된직업	약 력	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	임기
경영인	KG ETS 대표이사 前 KG그룹 전략실장	없음	2년

**3-2호 사내이사 박재선 선임의 건**

(1)후보자 인적사항

구 분	후보자 성명	생년월일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사내이사 (재선임)	박재선	1959.01.15	미해당	사내이사	이사회

(2) 후보자의 약력 및 당해 회사와의 거래 내역

주된직업	약 력	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	임기
경영인	現 KG그룹/이데일리 회장 現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現 한국철강협회 부회장	없음	2년

**3-3호 사내이사 박정현 선임의 건**

(1)후보자 인적사항

구 분	후보자 성명	생년월일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사내이사 (재선임)	박정현	1982.01.14	미해당	사내이사	이사회

(2) 후보자의 약력 및 당해 회사와의 거래 내역

주된직업	약 력	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	임기
경영인	現 KG스틸 부사장 現 KG그룹 경영지원실장	없음	2년

	前 기아자동차 근무		
--	------------	--	--

**(제4호 의안) 사외이사 선임의 건**

(1) 후보자 인적사항

구 분	후보자 성명	생년월일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사외이사 (신규선임)	서동진	1958.06.12	해당	없음	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

(2) 후보자의 약력 및 당해 회사와의 거래 내역

주된직업	약 력	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	임기
연구원	청정기술/에너지연구센터장 한국바이오연료포럼 부회장 아시아-오세아니아 녹색 및 지 속가능 위원회 한국 대표 한국과학기술원/KAIST 박사	없음	2년

**(제5호 의안)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**

구 분	당 기	전 기
이사의 수(사외이사 수)	4명(2명)	4명(2명)
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	100억원	12억원

**(제6호 의안)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**

구 분	당 기	전 기
감사의 수	1명	1명
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	1.5억원	1.5억원

**(제7호 의안)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**

\*아래 분할계획서(안) 주요 내용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예정인 주요사항보고(회사분할결정)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분할의 목적 및 경위

(1)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 하며,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(이하 “존속 사업부문”)

을 영위한다.

(2) 본건 분할 후 분할준속회사는 동사가 보유하게 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또는 존속 사업부문과의 시너지가 높은 신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거나 타 회사의 인수, 영업 양수 또는 합병 등을 통하여 시장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,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.

(3) 이를 통하여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며, 궁극적으로 분할준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한다.

## 2, 분할의 방법

(1)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,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존속 사업부문을 영위하며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·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.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한다.

구분	회사명	사업부문
분할준속회사 (코스닥시장상장법인)	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	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
분할신설회사 (비상장법인)	[코어엔텍] 주식회사(가칭)	환경·에너지 및 신소재 사업부문

주) 분할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,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음.

## 3, 분할의 주요 일정

구분	일자
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	2022년 [3]월 [10]일
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(기준일)	2021년 [12]월 [31]일
분할주주총회를 위한 공고 및 통지일	2022년 [3]월 [10]일
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	2022년 [3]월 [25]일
채권자 이의제출 기간	2022년 [3]월 [28]일~2022년 [4]월 [28]일
분할기일	2022년 [5]월 [1]일
분할보고 총회일 및 창립총회일	2022년 [5]월 [2]일
분할등기일(예정일)	2022년 [5]월 [4]일

주1)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(기준일)'은 본 분할계획서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

기준일임. 분할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서 분할계획서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, 분할회사 정관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 기준으로 주주를 확정함.

주2)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,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주3)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회의 결의·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.

주4)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 간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.

주5)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특별결의를 하여야 함.

주6)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회의를 개최 할 수 있음.

#### 4.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

[상호, 목적, 본점소재지, 공고방법 등]

구분	내용
상호	국문명: [코어엔텍]주식회사(가칭)
	영문명: [Core Energy Technology Co.Ltd](가칭)
목적	분할계획서 및 주주총회소집공고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본점소재지	[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5(정왕동)]
공고방법	[회사의 공고는 [서울특별시]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[이데일리]에 게재한다.]
결산기	[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이다. 다만, 분할신설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]

주) 상호,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본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.

[발행할 주식의 총수, 1주의 금액 및 액면주식·무액면주식의 구분]

##### 1)액면주식

구분	내용
발행할 주식의 총수	[400,000]주
1주의 금액	[500]원

##### 2)무액면주식

없음.

[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,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]

발행하는 주식의 총수	주식의 종류	1주의 금액
[100,000]주	기명식 보통주	[500]원

주) 상기 발행주식수, 종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##### 3)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

구분	내용
자본금	[50,000,000]원
준비금	[58,508,406,613]원

주1) 준비금은 보통주에 대한 주식발행초과금임.

주2) 상기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.

#### 5. 분할신설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(미정)

직명	성명	생년월일	약력	임기
사내이사(대표이사)	[윤석찬]	1966.12.21	KG ETS R&E사업부장	2년
사내이사	[곽재선]	1959.01.15	KG그룹 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데일리 회장	2년
사내이사	[곽정현]	1982.01.14	KG그룹 경영지원실(부사장) 前 KG동부제철 경영지원본부장 前 기아자동차 근무	2년
감사	[엄기민]	1965.04.15	KG ETS 대표이사 前 KG그룹 전략실장	3년

#### 6. 기타사항

분할계획서 및 승계대상목록 등 세부적인 사항은 3월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되는 회사분할결정 및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의결권행사 위임장

본인은 2022년 3월 25일에 개최하는 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의 제23기 정기주주총회 (그 속회, 연회 포함)에서 권유자 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( )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
----- 다 음 -----

1. 주주번호 :
2. 소유주식수 : 주
3. 의결권있는주식수 : 주
4. 위임할주식수 : 주
5.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

번호	주주총회 목적사항	찬성	반대
1호	제23기(2021년1월1일~2021년12월31일)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 승인의 건(1주당 현금배당 120원)		
2호	정관 일부 변경의 건		
3호	사내이사(엄기민, 박재선, 박정현) 선임의 건		
4호	사외이사(서동진) 선임의 건		
5호	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		
6호	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		
7호	분할 승인의 건		

6.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·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

-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
- 다만,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.

항 목	지 시 내 용

주주명: (인)

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:

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: 2022년 월 일 시